



즉시 보도용

2025년 2월 3일

자세한 정보 문의:

JP O'Hare

(518) 474-1201

Press@nysed.gov (링크로 이메일 발송)

www.nysed.gov

최근 공교육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뉴욕주 교육부 성명

뉴욕주 헌법은 "뉴욕주의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 시스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州)는 1954년 대법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 분리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판결했을 때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의회는 초등 및 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과 같은 법률을 통해 역사적으로 도외시되어 온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선시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널리 알립니다. 이들 법률은 다양성을 통한 강점의 모델입니다.

대통령이 최근 공포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전통에 상반됩니다. 행정명령은 또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법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헌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은 어떤 법률을 집행할지 또는 어떤 자금을 분배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두 연방법원에서 대통령의 연방기금 "동결" 시도에 즉시 금지명령을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 위원회와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명령들의 편협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돈의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주 통치위원회

The State Education Department /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 Albany, NY 12234

Office of Communications / (518) 474-1201